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0. 24 선고 2024가단2268 판결 [건물명도 등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9. 26.

판결 선고 2024. 10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69.7㎡를 인도하고,

나. 1,8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8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
2024. 3. 16.부터 위 가항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
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균부

별지